



## 퇴직금의 IRP 이관 의미와 한계

강성호 선임연구위원

### 요약

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관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47.6%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관되어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 그러나 현재도 IRP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근로자의 이직도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, 퇴직금의 IRP 이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. 동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이관 퇴직금은 정년시점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, 긴급자금 필요 시 관련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- (연구배경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, ‘근퇴법’) 개정으로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관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
  -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로 구분되며, 근퇴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직 시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관되도록 강제화됨
    - 퇴직금의 IRP계좌로 이관은 퇴직연금처럼 급여 시 연금화가 가능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함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퇴법은 이직 시 IRP계좌로 이관만 강제화할 뿐 이관 후, 해지 여부는 현행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율에 맡기고 있어 연금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
- 2020년 퇴직연금 가입률<sup>1)</sup> 52.4%<sup>2)</sup>를 고려하면 나머지 47.6%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이직 시 IRP계좌로 이관되고, 특히 소규모사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  - 소규모사업장일수록 퇴직금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, 동 제도개편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더 많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
    -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면 5인 미만 11.9%, 5~9인 29.6%, 10~29인 47.2%로 50% 미만의 가입률인데 반해 300인 이상은 69.1%임
    - 사업장 규모가 3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을 전후로 퇴직연금과 퇴직금 가입률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IRP계좌로 이관 후 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1)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비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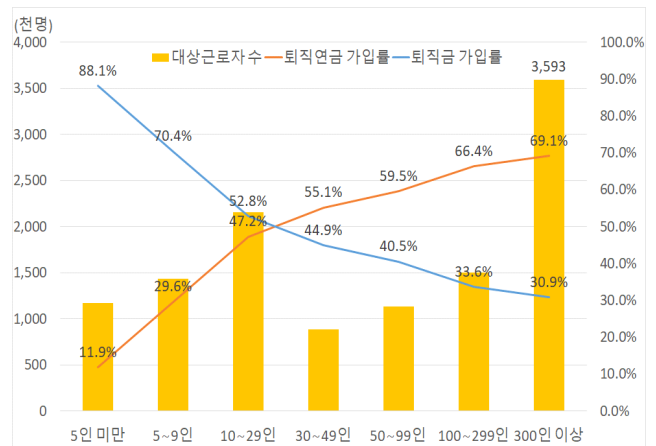
2) 통계청 보도자료(2021), “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”

〈표 1〉 퇴직연금·퇴직금 가입 현황(2020년)

| 구분          | 사업장         |           | 근로자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| 규모<br>(천 개) | 비율<br>(%) | 규모<br>(천 명) | 비율<br>(%) |
| 전체<br>(A+B) | 1,464       | 100.0     | 11,865      | 100.0     |
| 퇴직연금(A)     | 399         | 27.2      | 6,219       | 52.4      |
| 퇴직금(B)      | 1,066       | 72.8      | 5,646       | 47.6      |

자료: 통계청 보도자료(2021), “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”

〈그림 1〉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·퇴직금 가입 현황



○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그 과정에서 IRP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또한 IRP 이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

-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6.7년(2019년)<sup>3)</sup>으로 생애근로기간 동안 4~5회의 이직이 발생할 것으로 이해됨
  -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명이었으며, 5년 미만의 근속연수를 갖는 퇴직자가 62%로 가장 많았고, 퇴직 급여액은 2천만 원 이하가 88%(2,896천 명/3,293천 명)로 대부분이었음

〈표 2〉 퇴직소득자 수 및 근속연수 현황(2020년)

(단위: 천 명, %)

| 퇴직급여액          | 퇴직자 수        | 근속연수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5년 미만       | 5년 이상     | 10년 이상   |
| 전체             | 3,293(100.0) | 2,042(62.0) | 991(30.1) | 171(5.2) |
| 2천만 원 이하       | 2,896(87.9)  | 2,015       | 837       | 43       |
| 2천만 원~6천만 원 이하 | 269(8.2)     | 24          | 139       | 78       |
| 6천만 원~8천만 원 이하 | 31(0.9)      | 1           | 6         | 17       |
| 8천만 원 초과       | 98(3.0)      | 2           | 9         | 33       |

자료: 국세청(2021), 「2021 국세통계연보(2020년 기준임)」

- 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55세 이후 퇴직적립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, 적은 적립금은 일시금 수령 비율을 높하게 됨
  -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관한 인원과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 명(이관 인원 대비 해지율 98.2%)이고 총 해지금액은 11조 원(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.9%)에 달함(1인당 기준 이관 및 해지액은 각각 1,767만 원, 1,311만 원)
  - 이를 '15년~'20년까지의 합산한 값으로 살펴보면, 6년 동안 해지한 인원은 476만 명(이관 인원 대비 해지율 97.3%)이고 해지 금액은 63.2조 원으로 산출됨

3)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출함(고용노동부, 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(상용 5인 이상 부분)」)

〈표 3〉 개인형 퇴직연금 이관 및 해지 현황

(단위: 명, 억 원, %)

| 구분   | IRP 이관    |         |         | IRP 해지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| 인원(명)     | 금액(억 원) |         | 인원(명)     | 금액(억 원) |         |
| '15년 | 784,530   | 106,649 | 〈1,359〉 | 717,155   | (91.4)  | 94,699  |
| '16년 | 788,389   | 106,801 | 〈1,355〉 | 739,807   | (93.8)  | 105,762 |
| '17년 | 779,187   | 114,529 | 〈1,470〉 | 749,625   | (96.2)  | 100,726 |
| '18년 | 836,944   | 124,825 | 〈1,491〉 | 845,943   | (101.1) | 108,470 |
| '19년 | 844,123   | 138,982 | 〈1,646〉 | 864,801   | (102.5) | 112,463 |
| '20년 | 858,203   | 151,670 | 〈1,767〉 | 842,821   | (98.2)  | 110,521 |
| 합산*  | 4,891,376 | 743,456 | 〈1,520〉 | 4,760,152 | (97.3)  | 632,641 |

주: 1) 〈 〉안은 1인당 이관 및 해지금액임(단위: 만 원)

2) ( )안은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로 해지율임(단위: %)

3) \*는 '15년~'20년까지의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

자료: 통계청 보도자료(2018), “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19. 12. 27), “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1), “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”

- 이러한 과정에서 55세 연금수령 시점에서 적립금은 줄어들게 되고, 적립금이 줄어들수록 퇴직자의 일시금 수령 비율은 높아지게 됨(2020년 기준 일시금 수령 96.7%, 계좌당 적립액 1천 6백만 원)<sup>4)</sup>

○ 퇴직금의 IRP계좌로 이관이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년시점까지 해지를 제한하고, 긴급자금 필요 시 관련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- 퇴직금(퇴직연금 포함)의 IRP계좌로 이관을 법정 정년(60세)까지 의무화하되, 동 시점까지 이관된 퇴직급여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함
  - 주요 선진국(미국, 호주 등)은 아직 시 자동으로 퇴직계좌로 이관되어<sup>5)</sup> 퇴직연금 수급시점까지 인출할 수 없어 아직 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해지가 자유로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
- 다만,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자금 필요 시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함
  - 저소득근로자 및 퇴직직전연령(예: 50대) 등 취약계층 혹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저리의 담보대출이 제공되도록 함
  - 특히, 정책적 지원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종신 혹은 장기(예: 20년 이상)로 연금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, 조건 불충족 시 혜택을 회수하도록 함
- 무엇보다 퇴직금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영세사업장(예: 30인 이하)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(이후 구상권 행사 등)을 통해 IRP계좌로 이관하고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4) 연금수령자의 계좌 적립액은 1억 9천만 원 수준임

5) 이종은(2020), 「미국 연금법 개정(SECUR Act)의 특징과 의미」, 『자본시장포커스』, 2020-04호, 자본시장연구원